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5. 30 선고 2022가단11252 판결 [물품대금 및 보증채무금]

---

## 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1. B 주식회사

2.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3. 4. 18.

판 결 선 고 2023. 5. 30.

## 주 문

1.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5,594,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2. 1.부터 2022. 12. 12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,594,7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2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

#### 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#### 나.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### 2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

#### 가. 원고의 주장

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잔액 95,594,7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판단

1)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 주식회사 C 소유인 서울 중랑구 D 지상 E건물 제2층 F호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3. 21. 접수 제15314호로 근저당권자 원고, 채무자 피고 B 주식회사, 채권최고액 100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.

2) 그런데,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

않는다(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다283028 판결 등 참조).

3) 살피건대,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므로, 피고 주식회사 C은 담보물인 이 사건 건물로서 물적인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.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.

나. 소결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유정훈

## 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서울 강서구 G [ ]에서 주식회사 A [ ]이라는 상호로 채소 등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, 피고1. B [ ] 주식회사(이하 "B [ ]"이라고 합니다)은 채소 등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회사이고, 피고2. C [ ]은 피고1. B [ ]의 외상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한 회사입니다.
2. 원고는 피고1. B [ ]에게 2018. 9. 26.부터 2019. 1. 22.까지 외상물품을 공급하여 미지급 외상물품대금이 95,594,772원이고(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), 위 외상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2. C [ ]은 피고1. B [ ]이 이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피고2. C [ ]이 그 채무를 책임지겠다고면서 2019. 3. 14. 자신의 부동산인 서울 중랑구 D [ ], 2층 F [ ]호 [ ] 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합니다)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(갑 제3호증).
3. 그런데 피고1. B [ ]은 변제기일인 2019. 1. 31.이 지난 이후에도 위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1. B [ ]의 물상보증인인 피고2. C [ ]에게 이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2. C [ ]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
4. 이에 원고는 피고2. C [ ]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고(갑 제4호증), 2019. 5. 24.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1차 매각기일에 유찰되었는데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(175,000,000원)을 공제하면 남은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9. 10. 22. 기각되었습니다(갑 제5호증). 한편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2019. 9. 9. 피고1. B [ ]에게 송달되었습니다(갑 제6호증).
5.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의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